## 제10주차 강의

# 수출입통관과 대금결제

(제9장 무역계약의 이행)

10-1 수출입통관

10-2 관세와 관세환급

10-3 무역결제

10-4 신용장결제 방식

<교재> 글로벌 무역학 개론(오원석외, 탑북스, 2021) 및 참고자료

## 10-1 수출입통관

## 10.1.1 수출 통관(通關)

#### 1) 수출입통관의 의의

- o 통관(customs clearance)이란 세관을 통과한다는 뜻.
  -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거쳐야 하는 세관(custom house)절차를 말하며, 관세법상 통관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 12항).
    - \* 수출통관, 수입통관, 반송통관

#### 2) 수출통관

(1) 수출통관과 수출신고

관세법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통관이란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출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때 수출을 허용하는 세관장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수출신고수리는 내국물품을 외국물품화하는 효력이 있다.

- (2) 수출신고인
  - -관세사를 통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화주가 직접도 가능함
- (3) 신고자료 전송
  - -수출신고자는 수출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Uni-Pass에 전송해야 한다 \* Uni-Pass (인터넷 통관포털)
- (4) 서류제출신고
  - -수출신고물품의 약 95%가 신고후 별도 심사없이 Uni-Pass에서 자동신고수리 <예외적으로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① 각 법령에 의해 요건확인이 필요한 물품(전산으로 확인 안되는 경우)
    - ② 재수출 조건부로 수입하여 수출되는 경우 등
- (5) 신고서 처리 및 심사
  - ① 전자통관심사대상→ 심사면제
  - ② 심사대상물품→ 컴퓨터 화면 및 신고서류 검토
  - ③ 물품검사 후 수리→ 서류제출신고대상, 위조상품수출, 관세환급목적 위장수출, 분석의뢰 필요 시, 불법수출우려 시 등

#### 3) 특수형태의 수출신고

- (1) 선상(船上) 수출신고
  - -공인검정지관 감정서(산물, 광산물), 신선도유지 사유(내항선의 수산물→ 외항선박), 자동차운반선(신차)
- (2) 현지수출 어패류신고
  - -어패류를 외국현지에서 판매한 후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출항허가 세관에 신고
- (3) 원양수산물 신고
  - -공해상에서 채포한 수산물 수출→ 서울세관에 수출사실 증명서류 보고서 전송
- (4) 잠정수량신고,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
  - -배관설비 적재 또는 제조공정상, 원자재시세변동 → 예정수량 신고 후 실제수량 신고

#### 4) 수출물품의 적재 이행관리

- 0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함.
  -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수출신고수리 취소(적재기간 경과 물품)

#### 10.1.2 수입 통관(通關)

#### 1) 수입통관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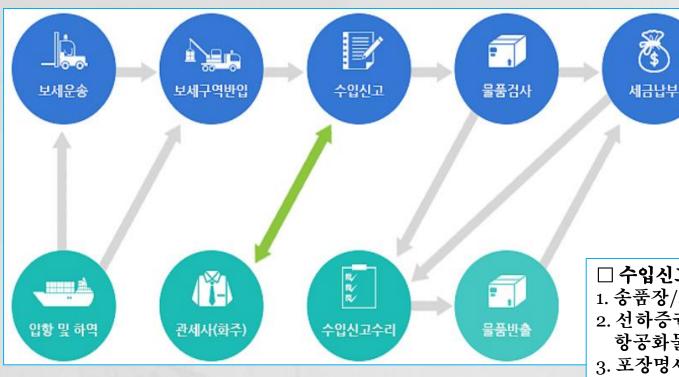
-수입통관(import clearance)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에 수입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때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세관장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수리"는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행정행위이며, 수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선박 등에 의해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등이다.

#### 2) 수입통관절차

-광의로는 본선에서 화물을 양륙하여 보세구역(bonded area)에 반입하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후 서류심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검사·감정 등을 거쳐 관세 및 내국 세를 납부한 후 수입신고수리를 받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지만,

-협의로는 수입신고 후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수입면허를 받을 때까지를 의미한다.

## 수입통관절차



#### □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 1. 송품장/가격신고서
- 2.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의 부본
- 3. 포장명세서
- 4. 원산지증명서
- 5.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 확인 서류
- 6. 관세감면 (분납)/용도세율적용 신청서

## 10.1.3 수출입의 금지 및 통관 제한

- 1) 수출입의 금지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영화, 음반 등
  - 화폐, 채권 등 유가 증권의 위조품 이나 변조품, 모조품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수출입금지
- 2)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의 통관제한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의 수출입 금지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 4) 통관보류 → 보세유치-수출입신고서의 기재사항 오류, 서류미비

10-2 관세와 관세환급

#### 10.2.1 관세 및 과세요건

#### 1) 관세의 의의

관세(customs duties, tariffs)란, 관세영역(관세선: customs line)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 2) 관세의 종류

종류	내용
〈과세기회〉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ul> <li>□ 수입세(Import duties):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li> <li>□ 수출세(export duties): 수출물품에 부과하는 관세</li> <li>*일반적으로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독점적인 해외시장이 있는 자원수출국에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부과하거나 국내의 한정된 자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예)인도네시아 팜오일,러시아의밀, 어류, 원목 등 * 북한의 수출세</li> <li>■ 통과세(transit duties): 그 나라에 단순히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오늘날에는 거의 찾아볼수 없음)</li> </ul>

종류	내 <del>용</del>					
〈과세방법〉 종가세·종량세 ·혼합세	■ 종가세(ad valorem duties):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 관세로, 우리나라의 관세는 대부분이 종가세(CIF기준) ■ 종량세(specific duties): 물품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로 단위수량당 세액이 정해져 있어 여기에 수입되는 수량을 곱해 세액이 결정된다. 〈맥주: 종가세→ 종량세 변경〉 ■ 혼합세(combined duties)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한 것으로 현행 한국의 관세율표상에 혼합세를 선택한 품목은 없다.					
〈과세목적〉 재정관세·보호 관세	■ 재정관세(revenue duties):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관세					
〈세율결정근거〉 국정관세·협정 관세	■ 국정관세(national duties): 한 나라의 주권에 의해 부과되는 관세로 그 나라의 국내법에 의해 정해진 국정세율을 적용한다. ■ 협정관세(conventional duties): 타국과의 조약에 의해 특정 물품에 대하여 일정률 이하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협정한 관세					

#### 3)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신속히 대처하여 탄력적인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법과 관세율은 국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보다는 행정부에 의해 관세율조정의 기동성을 발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이다.〈관세법에 규정〉

<헌법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종류	내 용					
덤핑방지관세 (anti-dumping duties)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덤핑으로 국내산업에 타격을 주는 등 경제적 혼란을 가져올 경우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b>덤핑의 효과를 상쇄</b> 할 만큼의 관 세를 추가부담 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복관세 (retaliatory duties)	타국이 자국의 수출품에 대해서 또는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해서 <b>불리한 대우</b> 를 하는 경우,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보 복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관세 (emergency duties)	국민경제상 중요한 <b>국내산업을 긴급하게 보호할</b> 필요가 있거나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특정 수입품의 관세율을 높여서 부과하는 관세이다.					
조정관세 (adjustment duties)	새로이 수입이 자유화되거나 <b>수입자유화</b>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물 품 중 특별히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국내산업을 보 호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이다.					

종류	내용
상계관세 (compensation duties, countervailing duties)	수출국에서 <b>수출보조금이나 장려금 또는 수출상품의 생산보조금</b> 등의 지원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기본 관세 이외에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편익관세 (beneficial duties)	국제조약에 의해 관세상의 혜택을 받지 않은 나라의 물품이 수입될 때 기존 체약국에게 부여하고 있는 관세상의 혜택의 범위 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 을 부여하는 것이다.
계절관세 (seasonal duties)	국내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특정 물품의 공급을 원활히 하거나 특정 수입품의 가격등귀를 억제할 목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계절에 따라 가격이수시로 변동하는 물품의 가격을 평준화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관세율을 조정하는 데 이용된다.
할당관세 (tariff quota)	특정 물품의 수입에 있어서 일정수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b>부과하고 일정</b> 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수량을 조절하기 위한 관세이다.

#### 4) 특혜관세 (preferential tariff)

특정국과의 통상확대를 목적으로 특정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할인관세**라고 할 수 있다.

#### **■ 일반특혜관세(GSP)**〈관세법 76-77조〉

① GSP의 의의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거나 일반 관세보다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제도를 말한다.

② GSP의 수혜원칙

수혜국이 특혜대상품목을 공여국으로부터 수혜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는 원산지규정에 의거한다. 원산지규정은 GSP에 의거한 특혜관세의 이익을 수혜국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물품에 한정시키고 제3국의 물품은 근본적으로 제외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었다.

#### 10.2.2 관세환급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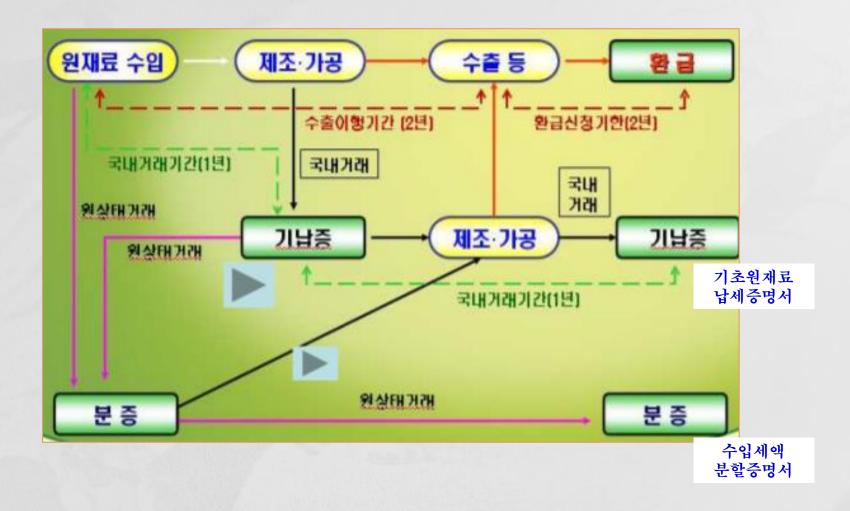
#### 1) 관세환급의 의의

- -관세환급이란, 세관에서 일단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
- -현행 관세법상에는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환급과 수입 시에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를 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동 수출물품에 포함된 관세 등을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관세환급이 있다.
  - \* 관세 등이라 함은 관세+내국세(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육세)도 포함한다.

#### 2) 관세환급의 방법

- ①(개별환급)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소 요량증명서 등에 의하여 일일이 계산하여 환급금액을 산출하여 환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②(자율소요량계산) 수출기업이 스스로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량을 산정하여 관세환급 신청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 ③(정액환급) 수출물품별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사전에 정하여 정액환급률표에 기재해 놓고 그러한 물품이 수출되었을 때 수출신고필증만 제시하면 환급해 주는 방법이다.

## 관세환급절차



#### 3) 관세환급의 신청

(환급신청권자)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당해 수출물품을 수출한 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타인에게 수출을 위탁한 자나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완제품 내국신용장에 의거 완제품을 수출하는 자에게 공급한 자는 **수출업자로부터 관세 등의 환급신청권을 양도받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권의 소멸)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이때 수출 등에 제공된 날이란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필증 상의 수출신고수리일이며, 외환판매, 공사, 보세구역 등에의 물품공급 및 기타 수출의 경우는 당해 수출, 판매, 공사 또는 공급 등을 완료한 날이 된다.

####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납부 혜택

- (1)수출용 원재료 수입 시 관세 등의 사후납부
  -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한 후 통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 통관하는 경우 기업의 자금부담 등 문제가 있고 통관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물류지체 등 문제가 있어 1996.1.1.부터 관세 등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납부 없이 수입통관하고 15일 이내 사후 납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 -일괄납부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에 납부할 관세 등을 6개월 기간내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현재는 분기)별로 환급액과 상계·정산하여 그 차액을 납부 또는 환급하는 방법이다.
-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액의 정산
  - -수출용 원재료는 수출물품으로 제조되어 수출된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게 된다.

## **10.2.3 보세제도**(保稅制度; bonded system)

#### 1) 외국물품의 관리

외국물품은, ①항만(공항)으로 출입해야 한다. ②하선/적재하기 전에 세관장에 신고한다. ③허가없이 옮겨 실을 수 없다. ④ 보세구역에 장치해야 한다. ⑤ 보세운송 등을 해야 한다.

#### 2) 보세제도 및 보세구역 제도

〈보세제도〉관세징수를 유보하고, 수입신고미필하에서 일정 기간/장소에 보관 등을 하는 절차

〈보세保稅〉수입신고 미필상태

〈지정보세구역〉 세관장이 일정 구역을 지정한 곳

〈특허보세구역〉민간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개인의 토지 등을 특허한 곳

〈보세공장〉외국물을 원재료 제조가공 작업을 하는 장소

〈보세전시장〉 박람회/전시회를 위해 외국물품을 장치해 두는 장소. 재반출 전제.

〈보세건설장〉 외국물품의 상태로 산업시설의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 나중에 신고해야함.

〈종합보세구역〉 공항이나 항만에 지정함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법 등에 의해 지정된 곳

#### 3) 보세운송제도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것. 항만(공항)→ 보세구역

## 10.2.4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도

#### 1) 의의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도란,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수입행위를 근절하여 궁극적으로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2)원산지 적용범위 및 표시

- (1) 원산지표시방법 (한글, 영문 또는 한문으로 표시)
  -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 영문표시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 Ma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등
- (2) 표시단위: 최소 포장단위로 당해 수입물품의 현품에 표시
- (3) 표시요령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 (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

- (4)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 -외화획득용 원재료 및 시설기자재
  - -국내 반입되어 판매되거나 또는 임대할 목적이 아닌 수입품

#### 3) 원산지 판정

- (1) 완전생산기준
  - 주로 **천연생산물 또는 천연생산품**으로 물품의 전부를 제조한 상품에만 적용된다.
  - \* 완전생산물품: 다른 국가의 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 물품의 생산과정이 한 국가 내에서 수행된 물품
- (2) 실질변형기준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변형'을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이란 당해국에서의 제조 또는 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 4) 수입품 리콜조치

수입품 리콜(보세구역 반입명령)조치란,

- ①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
- ② 수입신고수리 당시 세관이 부여한 조건을 위반한 물품(예: 사료용으로 수입된 곡물이 통관 후 식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 ③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등을 전량 보세구역으로 회수하여 위법사실을 치유한 후 반출 허가하거나 통관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토록 하는 관세청의 시정명령을 말한다.

10-3 무역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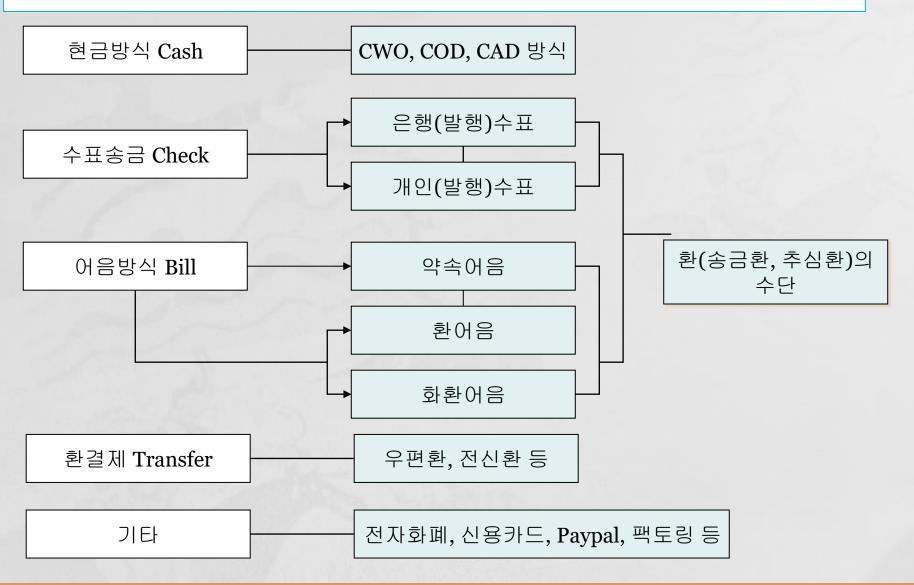
## 10.3.1 무역결제의 의의

무역거래의 당사자들은 거래과정에 위험에 직면하는 데, 수출자는 대금회수 위험을, 수입자는 적합한 물품의 수령과 납기 준수 과정의 위험을 갖는다. 대금결제의 시점에 따라 무역거래자의 위험이 변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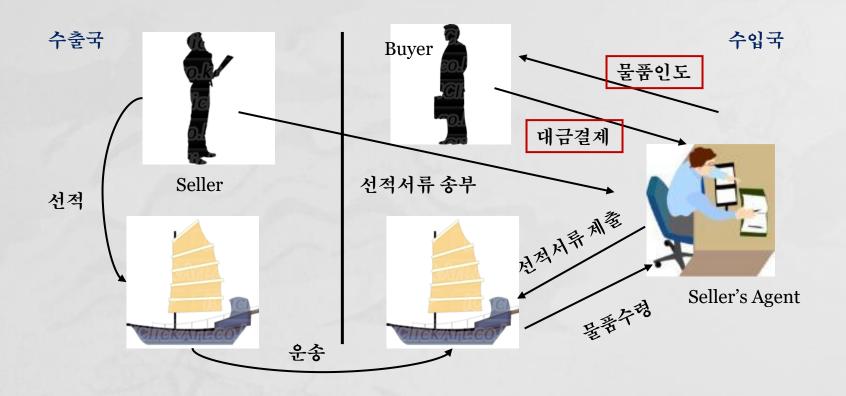
#### 무역대금 결제형태에 따른 당사자의 위험

	위험도	대금결제 방식 & 시기	위험도	
	높음	o 사후송금방식(later remittance) -서류상환도CAD(Cash against document) -현물상환도COD(Cash on delivery) -건별외상Open Account	낮음	
매도인 Seller		o 추심결제방식(collection) -인수인도방식(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지급인도방식(D/P; Document against Payment)		매수인 Buyer
		o 신용장방식 -기한부신용장(usance L/C) -일람불신용장(sight L/C)		
	낮음	o 사전송금방식(advance remittance) -주문불거래방식CWO(Cash with order) -Payment in advance by T/T	<del>-&gt;</del> 사	

## 10.3.2 무역결제 방식의 유형과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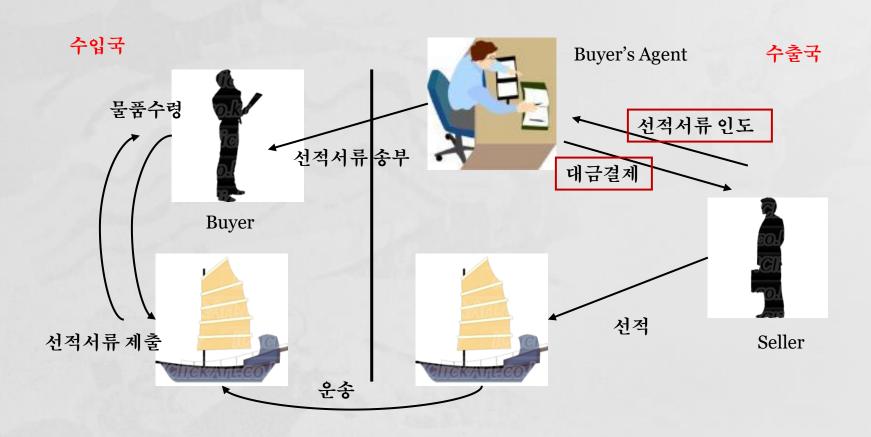


1) 현물상환도(COD: Cash on Delivery)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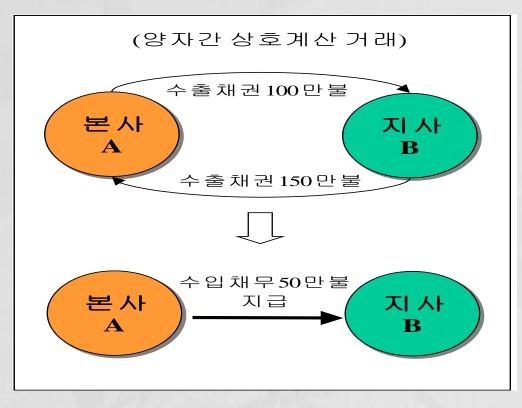


\* 주문선지급(CWO: Cash with Order) 방식

## 2) 서류상환도(CAD: Cash against Document)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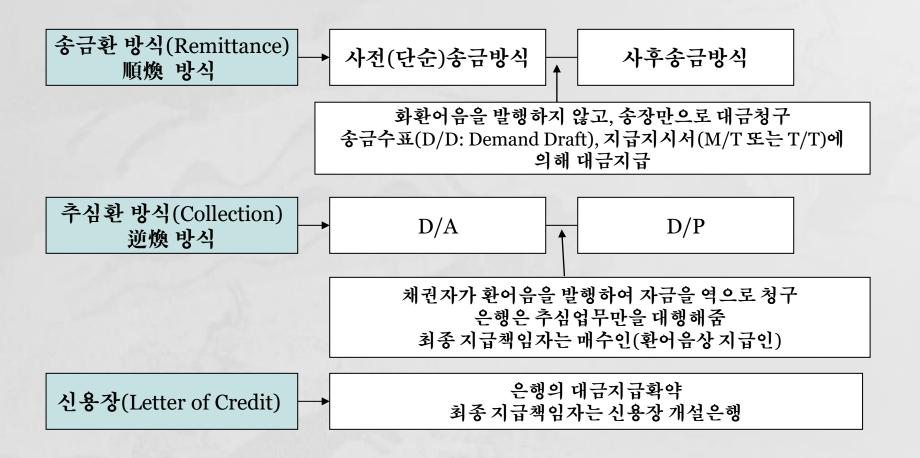


## 3) 상호계산(Offsetting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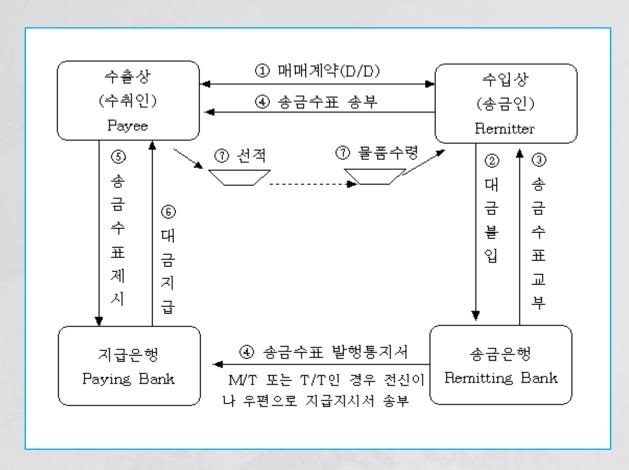


→ 본지사간 또는 고정거래선과의 수 출입·자본·용역거래 등으로 채권·채무 가 빈번히 발생할 경우 지정거래외국 환은행에 공동의 계정을 두고 서로 상 쇄하고 남은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

## 10.3.3 화환어음 개입 여부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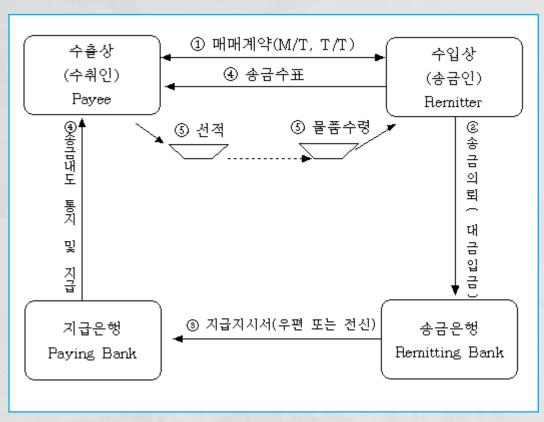


## 1) 송금수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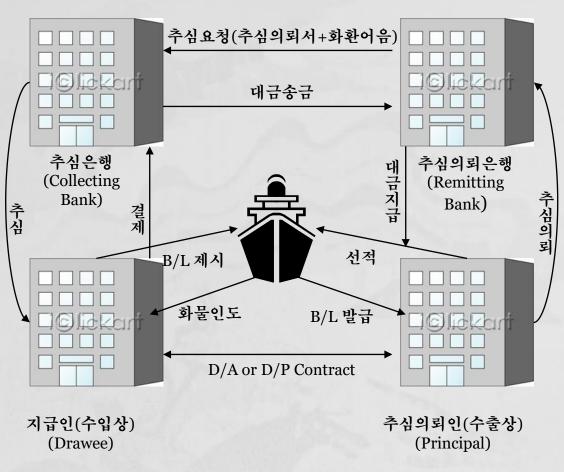
→ 송금인이 대금을 불입하고 발행은행으로부터 송금수 표를 교부받아 직접 수취인에게 송부하고, 이를 수령한수취인은 송금수표상 기재된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여수표대금을 찾는 방법.

## 2) 우편환 및 전신환 방식



- → **우편송금방식**: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송금수표 대신 자행의환거래은행(지급은행)으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에 해당하는 우편환(mail transfer: M/T)을 발행하여이를 송금은행이 직접 지급은행 앞으로 **우송**하는 방식이다.
- →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T/T): 지급지시를 전신으로 하는 것 외에는 우편환의 경우와 같다.

## 3) 추심방식의 대금결제



- → 송금환과 반대로 채권자가 자금을 역 청구하는 역환방식.
- → 지급지가 외국으로 되어있는 수표나 어음을 고객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의뢰 받아 지급인에 대해 직접 또는 거래은행 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여 받는 과정
- → D/P(Document against Payment)조건인 경우 일람불 환어음을 발행하고, 지급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선적서류 인도.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조건인 경우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고 지급인이 인수하면 선적서류 인도.

10-4 신용장 결제방식

## 10.4.1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의 개요

#### 1) 신용장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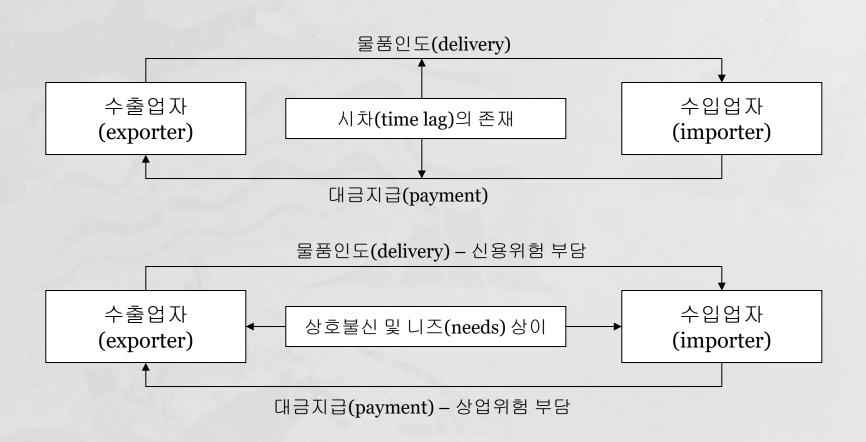
신용장은 개설의뢰인(applicant)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이 수출상에게 서류요건 충족 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 즉, 수입상을 대신하여 은행이 수출상에게 보내는 신용제공 서신

#### 2) 신용장의 특성

- (1) 독립성의 원칙(principle of autonomy)
  - -신용장은 매매계약을 기초로 개설되지만, 개설 후에는 매매계약과 독립된다. 신용장의 조건이 매매계약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금지급 지연이 안됨.
- (2) 추상성의 원칙(principle of abstraction)
  - -신용장 거래는 물품거래가 아니라 서류거래이다. 수출상이 신용장에 나타난 서류를 제시하면 물품과 상관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사기는 예외.
- (3) 독립.추상성으로 인한 신용장거래의 한계
  - -수출상의 성실한 계약이행에도 불구하고, 수입상이 사소한 서류상 하자를 이유로 대급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Unpaid
  -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선적된 물품이 매매계약된 물품의 품질조건과 불일치하더라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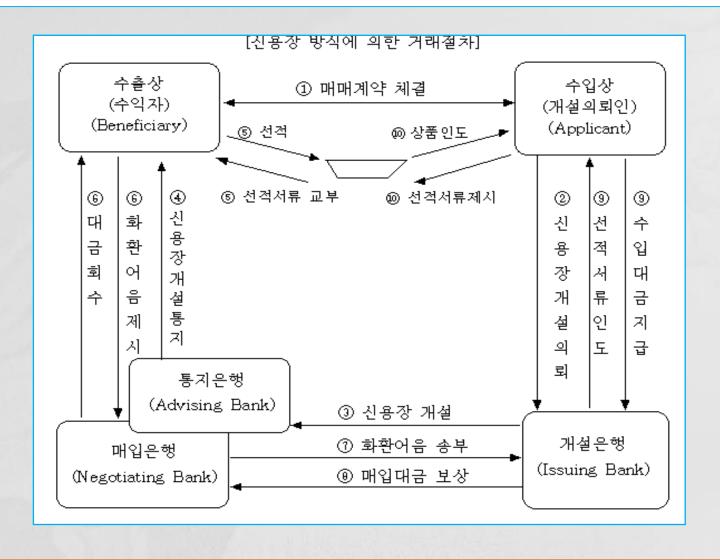
## 무역계약의 이행에 따르는 위험



## 신용장 예시

```
Logical Terminal Q6YGA641
↑ 2016APR28 13:54:30
                       Print
                                 User DSLCXT
                      Issue of a Documentary Credit
                                                               Page 00001
MT 5700
                                                               Func PRSIDOC
                                                               UMR 62005737
MSGACK {1:F21BACXSI22AXXX7382473570}{4:{177:1604281354}{451:0}{108:110}}
Basic Header
                   F 01 BACXSI22AXXX 7382 473570
Application Header I 700 JAMUBDDHX045 N
                         *JAMUNA BANK LIMITED
                         *DHAKA
                         *(FOREIGN EXCHANGE BRANCH)
User Header
                   Service Code
                                   103:
                   Bank. Priority 113:
                   Msg User Ref. 108: 110
Sequence of Total *27 : 1 / 1
Form of Doc. Credit *40 A : IRREVOCABLE TRANSFERABLE
Doc. Credit Number *20 : 1200173
Date of Issue 31 C : 160428
Applicable Rules *40 E : UCP LATEST VERSION
                *31 D : Date 160712 Place BANGLADESH
Expiry
Applicant
                   *50 : MI-U D.O.O.
                           USNJARSKA CESTA 8
                           1241 KAMNIK
                           SLOVENIA
Beneficiary
                   *59 : TUBA FASHION LTD
                           PLOT 1680 AND 1683, ANANDA NAGAR
                           MERUL BADDA, BADDA, DHAKA 1212, BANGLADESH
                   *32 B : Currency USD Amount 9.347,20
Amount
Pos. / Neg. Tol.(%) 39 A: 05 / 05
Available with/by *41 D : ANY BANK IN BANGLADESH BY NEGOTIATION
Partial Shipments 43 P : ALLOWED
Transhipment 43 T : ALLOWED
Port of Loading 44 E : CHITTAGONG, BANGLADESH
Port of Discharge 44 F : KOPER PORT, SLOVENIA
Latest Date of Ship. 44 C : 160627
Descript. of Goods 45 A : AS PER PROFORMA INVOICE NO. TGL002 DATED 20.03.2016
```

## 신용장 방식에 의한 거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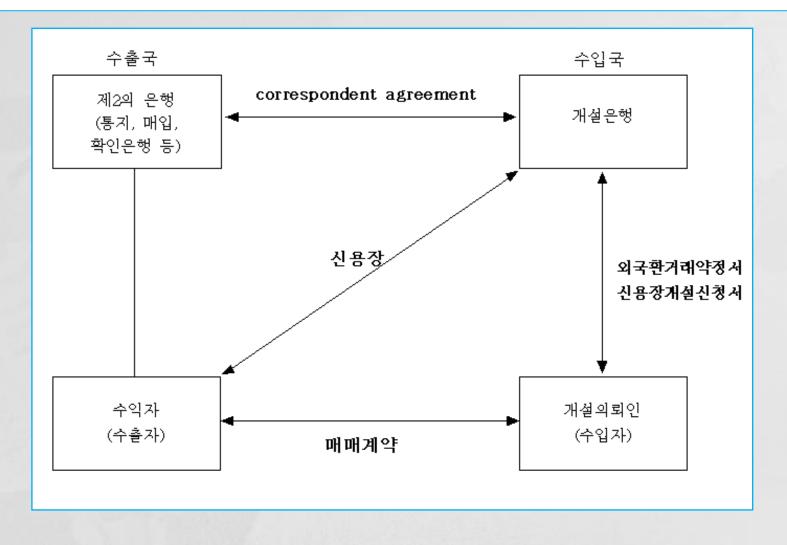


#### 10.4.2 신용장 거래당사자

#### 1) 기본당사자(basic parties)

- 신용장거래에서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당사자
- 취소불능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기본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취소나 변경이 가능함.
- □ 개설의뢰인(applicant)
  - 거래은행에 대도인 앞으로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
- □ 개설은행(issuing bank)
  -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한 수익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은행.
    - → 수익자에 대하여 신용장에 따른 지급 또는 인수의 최종적인 의무를 부담.
- □ 수익자(beneficiary)
  - 신용장의 편익을 누리는 당사자. 수익자는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시하는 한, 개설은행이나 기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대하여 일방적인 지급청구권을 갖는다.
- □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신용장에 확인이 추가되는 경우 개설은행과 동일한 지위를 맡게 되는 은행

## 신용장 거래당사자



#### 10.4.2 신용장 거래당사자

#### 2) 기타 관계당사자

- 신용장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신용장의 통지, 매입, 지급, 인수, 상환과 관련하여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등 간접적으로 협조하거나 참여하는 당사자들.
- □ 통지은행(advising bank)
  -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 수익자에게 신용장의 개설과 그 내용을 통지하는 은행.
  - →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신용장의 외관상의 진정성만을 확인하고 이를 통지할 뿐,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음.
- □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 -수익자가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발행된 환어음에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화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할 때 이를 매입하는 은행.
  - -매입은행은 자신의 자금으로 화환어음을 매입한 후 이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여 보상받게 되므로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선의의 소지인(bona-fide holder)이 된다.

#### 10.4.2 신용장 거래당사자

- □ 지급은행(paying bank)
- 개설은행의 수권을 받아 신용장대금의 결제를 담당하는 은행
- 매도인이 발행하는 환어음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
- 지급은행은 개설은행의 법적 대리인 →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한 은행은 개설은행으로 부터 결제대금을 상환받게 됨.
- 최종적인 지급책임은 개설은행이 부담.
- □ 인수은행(accepting bank)
-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발행된 환어음을 인수하도록 지정된 은행.
- 인수은행의 인수는 어음의 만기일이 되면 상환청구권의 행사 없이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무조건적인 지급확약이다.
- 지급은행은 개설은행의 법적 대리인 →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결제한 은행은 개설은행으로 부터 결제대금을 상환받게 됨.
- 최종적인 지급책임은 개설은행이 부담.

#### 10.4.3 신용장 종류

- (1)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과 무담보신용장(clean L/C)
  - 화환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에 선적서류가 첨부되어야 하고, 무담보신용장은 선적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지 않는 신용장이다.
    - \* 부담보 신용장은 현지금융을 위해 해외지점의 채무보증 목적으로 개설한다
- (2)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과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
  - 신용장의 취소가능여부에 따라서 구분
  - 취소불능신용장은 신용장거래의 기본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조건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이며 취소가능신용장은 수익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다.
  - -신용장은 취소가능(revocable)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취소불능으로 간주한다.
- (3) 확인신용장(confirmed L/C)과 무확인신용장(unconfirmed L/C)
  -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의 은행이 개설은행의 확약과는 별도로 수익자에게 지급/인수/매입의 확약을 추가한 신용장을 확인신용장이라 한다.

#### 10.4.3 신용장 종류

- (4) 매입신용장(negotiation L/C)과 지급신용장(straight L/C)
  - 매입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어음의 발행인뿐만 아니라 배서인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도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이다.
  - -지급신용장은 개설은행이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확약 없이 수익자에게만 개설은행이나 지정은행에서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대금을 지급받도록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이다.
- (5) 일람출급신용장(sight L/C)과 기한부신용장(usance L/C)
  -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의 지급기간에 따라 구분.
  - -일람출급신용장은 환어음의 지급기간에 따라 환어음의 지급인인 개설은행에 제시되는 즉시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이다.
  - -기한부신용장은 어음이 제시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신용장이다.

#### 10.4.3 신용장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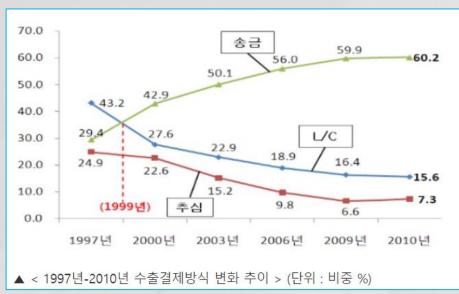
- (6)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과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L/C)
  - 양도가능신용장은 최초의 수익자, 즉 제1수익자가 제3자인 제2수익자에게 1회에 한하여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신용장이다.
  - 양도불능신용장은 이러한 양도가 금지된 신용장이다.
  - -신용장의 양도는 신용장상에 오직 transferable이란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함.

## 10.4.4 신용장 통일규칙(UCP;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

- o 1920년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에 신용장 통일작업 개시
  - → 1933년 ICC총회에서 채택, 매 10년마다 개정
- o 2006년 파리에서 개최된 ICC은행위원회에서 UCP600(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채택
  - \* UCP는 국제민간단체인 ICC가 채택한 통일관습→ 국제협약이 아님.

## 무역대금 결제 방식의 변화 추이와 요인

최근에는 신용장 및 추심 결제 등이 크게 감소한 반면, 송금결제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2 (1557) LOTOL   E 2 (15 )   E 1   1   1   1   1   1   1   1   1									
	수출대금결제방식의 변화 추이									
		-					(단위:%)			
년도	단순송금	동시송금	D/A	D/P	위탁 (수탁) 가공무역	기한부 신용장	일람 <del>출</del> 급 신용장	기타유상	기타무상	
2000	28.1	14.9	19.6	3.1	3.2	4.6	23	1.4	1	
2005	37.6	16.6	9.5	1.8	4.3	4	16	7.5	2.7	
2010	46.9	13.3	6.3	1	7.6	3.7	11.9	7.5	1.3	
2017	58.3	8.3	7.4	3.2	4.9	5.9	10.5	0.3	1.2	
자료 : www.kita.net										



<제11주차 강의 예고>

무역운송과 무역분쟁

수고 많았습니다